

서울고등법원

제 1 0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7나2019539 주주총회결의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C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가합62872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51549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의 2014. 3. 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의 별지 기재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2014. 3. 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의 별지 기재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 전기기구 및 관련 기구 등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3. 28.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을 피고의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의 실질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한다)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된 명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의 총 발행주식(보통주식) 50,929,817주 중 2,604,300주의 명의인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7. 4. 4. 기준 피고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 중 23,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2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최대주주 및 현 경영진이 주주총회 의사진행의 권한을 남용하여 관련 법령 등을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그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2) 관련법리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하여 작성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자본시장법 제316조 제2항), 이 경우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는 주주명부상 주주와 동일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면서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와 무효확인 및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주주의 이러한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한다.

3) 판단

갑 제2, 15 내지 17, 29, 31 내지 33호증, 을 제1, 2, 9, 11, 15 내지 17, 20호증, 병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34, 35호증의 각 일 부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10. 7. 하나은행에 예금계좌(계좌번호 E)를 신규로 개설하였는데, D가 2013. 10. 15.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서 위 계좌로 D 및 D의 처 F, D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 등(이하 'D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합계 75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그 즉시 출금되어 피고 발행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는데 사용된 점, ② 원고의 위 하나은행 계좌는 개설된 이후 2014. 6.경까지 D 등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고 발행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원고의 키움증권 계좌로 다시 송금 되는 데에만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위 75억 5,000만 원 중 D가 2013. 10. 15.부터 2013. 10. 30.경까지 원고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합계 31억 5,000만 원은 그 각 송금 즉시 원고의 키움증권 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의 발행주식 2,468,200주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는 데 사용된 점, ④ 중부지방국세

청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 발행 주식 중 원고가 D 등으로부터 받은 31억 5,000만 원으로 취득한 주식 2,468,200주는 D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2015. 5. 7.경 원고에게 이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한 점, ⑤ 원고는 위와 같은 주식 취득자금 75억 5,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D 등으로부터 2013. 10. 15.부터 2013. 10. 30.까지 송금받은 31억 5,000만 원은 D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L의 경영 및 노무에 관한 자문을 하여 준 대가로 받은 것이고, 2014. 4. 11. 송금받은 25억 원 및 2014. 5. 13. 송금받은 19억 원 합계 44억 원은 D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자문료 및 차용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D가 원고의 승낙을 얻어 원고 명의로 피고 발행의 주식을 매수하고 실제로 그 주식대금을 모두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키움증권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피고가 발행한 주식을 장내매수한 후 실질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D가 주식대금을 모두 부담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 발행의 주식을 실제로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및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결의에 따른 피고 보조참가인의 임기는 3년이므로 2017. 3.경 피고 보조참가인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2017. 3. 21.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후임 사외이사로 Q이 선임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설령 이 사건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관련법리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이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결의에 의하

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절차상·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 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을 제25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결의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한 사실, ②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3. 28. 피고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여 2017. 3. 28. 퇴임하였고,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등재된 사실, ③ 피고는 2017. 3. 21. 제5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Q 선임의 건을 제4호 의안으로 상정하였고, 위 안건은 출석주주 과반수의 찬성과 발행주식총수 1/4의 찬성으로 가결된 사실, ④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Q이 2017. 3. 21. 사외이사로 취임한 내용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피고 보조참가인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피고가 Q을 새로운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등기까지 마친 이상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비록 그 이유는 다르나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정수진 김수영

별 지

별지

이사·감사 선임결의사항

개최일시 2014. 3. 28. 09시

개최장소 경기도 화성시

사외이사 1인 선임결의사항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3-3호 사외이사

[끝]